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디지털체험센터 및 달서디지털창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4. 9. 30.

기획재경위원회

1. 심사경과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디지털체험센터 및 달서디지털창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제 출 자: 달서구청장(디지털정보과)
- 제출일자: 2024. 9. 12.(목)
- 회부일자: 2024. 9. 12.(목)
- 상정 및 의결: 제30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2024. 9. 30.)

2. 제안이유

- 디지털 대전환의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디지털 기술은 우리 생활 주변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어 유아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의 지역주민이 디지털 기술을 친숙하게 생각하고, 쉽게 다룰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 기반 체험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 과기부 주관 2023, 2024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공모사업을 추진한 결과 달서디지털체험센터를 2023년 11월에 개소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달서디지털창작센터를 12월에 조성 완료할 예정임.
- 이에 따라 지역주민의 디지털 문해력 향상과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조성한 달서디지털체험센터 및 달서디지털창작센터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며,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 현황

- 위치: 달서디지털체험센터(상화로 272(도원동), LH 대구경북지역본부 1층)
달서디지털창작센터: 서당로 30(신당동), 舊 신당중학교 1층



- 규모 및 공간구성

시설명	면적(m ²)	공간구성	비고
달서디지털 체험센터	681.31	교육공간(30석), 디지털 제작실(장비실), 체험공간, 실감미디어 공간 등	
달서디지털 창작센터	588.30		소계
	358.30	교육공간(30석), 체험공간, 사무실, 창고	교실동
	230.00	대형 스튜디오, 소형 스튜디오, 체험 스튜디오	조리실

※ 위탁금액: 연간 330,000천원 정도

※ 인력운영: 4명(기간제 제외)

나. 위탁개요

○ 위탁사무 내용

- 시설(2개소) 및 장비 운영·관리 전반
- 로봇,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 체험 프로그램 및 디지털 제작 장비 교육
- 미디어 크리에이터 교육 및 미디어 체험 프로그램 운영
- 디지털 취약계층 대상 수요 발굴을 통한 필요 교육 및 서비스 제공
- 그 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위탁기간: 2025. 1. 1.~2026. 12. 31.(2년)
-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심사위원회 심사·선정

4. 참고사항(관계법령 등)

- 「대구광역시달서구 디지털체험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및 제5조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10조

5.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디지털체험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 IT·로봇 분야 전문가(관련분야 교수)에게 민간위탁 적정성에 대한 자문을 사전에 거쳤으며, 로봇·인공지능 등 고도의 디지털 분야 전문성과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 본 동의안은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인공지능, 로봇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의 체험·교육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충분하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디지털체험교육시설 민간위탁에 대한 개별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그 외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음.

6. 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